

회의록

회의 일자	2024년 11월 23일	기록자(서기) 명	이지안
회의명	상임위원회의 9	위원회	외교통상
참석 의원			
김단아, 김지호, 이지안			
회의 주제 (안건명)	국제개발협력법		
회의 내용			
<p>김지호 의원: 제15조 ⑥ 개발도상국가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 참여 — 어떤 체계적 구조를 통해 그 보장이 실현될 수 있을지...</p> <p>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시스템의 존재 여부에 대해 논의 (호 추가 권유)</p> <p>김단아 의원: 호 추가 권유를 수용함.</p> <p>김지호 의원: 개발도상국에서 인구 급증과 생명 자원의 부족 현상으로 인해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세계 식량 계획의 조사 결과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제15조 6항에 의거하여, 식량 부족 국가와 지역, 가정에 필요한 품종의 씨앗 및 농업 관련 물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 자립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p> <p>김단아 의원 (FOLLOW-UP): 개발도상국과 구성원의 참여 문제는 상호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에 반대함. “⑥ 개발도상국가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 농업 물품 지원은 자립적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국제개발협력에서 농업 물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과 대한민국의 협력 방향은 일치하지 않다고 주장함.</p> <p>김지호 의원 (FOLLOW-UP): 각 가정과 지역의 상황은 상이하므로, 이러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 지역에 적합한 방식으로 참여 보장을 실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p> <p>김보민 멘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도상국 관련 법안이 지나치게 해이해질 위험이 있음. - 강제적인 방안을 취할 경우, 국제개발협력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법률은 추상적이지 않으면서도 일정 정도의 추상성을 갖춰야 하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 관계를 반영한 것임. - 상대 국가와의 평등한 협상 위치에서 개발협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각 국가의 국민들이 그들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중한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정책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은 지양해야 하며, 개발도상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함. 			

김지호 의원:

개발도상국과 대한민국은 상호 협력을 도모해야 함에 집중해야 함 (노트 참고)
평등하다는 부분은 어떻게 확실히 할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함 → 호 추가

김보민 멘토:

국가가 국민들과 합의서를 체결할 때 일부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
호 추가는 필요하지 않음.
"계약"이라는 용어는 국제개발협력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다른 조항들과 용어를 일관성 있게 통일할 필요가 있음.

김지호 의원:

수정: 개발도상국과 대한민국은 균등한 위치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약 내용에 있어 어느 한쪽에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김보민 멘토:

상대 국가와 평등한 위치에서 개발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각 국가의 국민이 참여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행정적, 비용적 측면에서 과중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세부적인 측면에서 지나치게 복잡할 경우, 본회의에서 논란이 많아질 수 있음.

김지호 의원:

수정: 개발도상국가와 대한민국이 균등한 위치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과정에서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김보민 멘토:

제18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 ①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계획·운영한다.
- ③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실적을 포함한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대상·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및 국민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15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전략 수립)

-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 등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저개발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할 대상국(이하 “중점협력대상국”이라 한다)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주관기관에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심사하여 중기지원전략을 확정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협력대상국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주권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지원전략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점협력대상국’: 위 문구에 대한 위당을 일관되게 사용할 것. 이 표현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공식 용어로, 문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유용함. (위당 "중점협력대상국"으로 바꾸는 것 추천)

비고:

- 국제개발협력법 (OFFICIAL)
- 김단아 의원 - 입법청원안 (국제개발협력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다음 회의 일정 단체 특방 확인****